

어르신들의 “꼭” 필요한 복지용구

“필요할 때” “필요한 상품을” “필요한 기간만큼”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성남의료기복지용구

1. 성희롱 및 성폭력 이란

가. 성희롱

성희롱은 직원 간 또는 수급관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요양보호사, 수급자, 동료등)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및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나. 성폭력

성폭력은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 강간 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전화, 성기노출,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 행동의 제약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에 해당된다.

다. 성폭력의 유형

구분	행위
육체적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 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행위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 사진 · 그림을 보내주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좁은의미의 성폭력 행위(범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적목적에 의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2. 예방 및 대응방법

가. 올바른 이해

- 1) 성폭력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잔인한 범죄행위이다.
- 2)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근친, 친인척, 애인, 데이트 상대, 선후배, 직장상사, 동료, 이웃사람.
- 3) 성폭력은 한밤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피해자의 집이나 가해자의 집, 학교, 학원 주변, 유치원, 화장실, 직장, 여관, 공원, 만화방, 아파트 놀이터, 뒷산 약수터, 노래방 등에서 일어나기 쉽다.
- 4) 성폭력범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나.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직원 : 수급자)(직원 : 어르신)(직원 : 직원)

- 1)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 존칭을 사용한다.
- 2)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
- 3) 평소 기관 내에 성희롱 및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4)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사적인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 5) 동료 및 수급자들 간의 음담패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
- 6) 직원이나 수급자의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다.
- 7) 평소 직원이나 어르신들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양해를 구한다.
- 8)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을 붙이고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한다.
- 9) 어르신께서 자신의 성적언동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 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 10) 어르신께서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긍정의 의사로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 11) 관리자는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바꾸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미연에 방지한다.
- 12) 관리자는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한다.
- 13) 관리자는 사무실 내에서 직장 내에서 혹은 회식자리에서 누군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즉시 주의를 준다.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직원->수급자

- 휠체어에 어르신을 앉힐 때 품에 안기거나, 몸을 쓰다듬는 경우
- 지팡이의 높낮이를 조절해 드릴 때 의도적으로 손을 만지는 경우

수급자->직원

- 몸 일으키기가 가능한 어르신이 침대에서 못 일어난다며 일으켜 달라고 해서 품에 안기는 경우
- 본인부담금 납부시 현금이 파자마 안에있다며 직접 꺼내라고 하는 경우
- 지속적으로 직원의 등을 쓰다듬으며 젊다, 등이 넓다고 이야기하며 따라다니는 경우

직원(관리자)->직원(관리자)

- 개인적인 사생활을 물어보고 알려는 경우
- 업무를 알려준다며 몸을 필요이상으로 가까이 붙이는 경우
-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원하지 않는 선물 및 배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퇴근후에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경우

3. 성폭력 대처방안

○ 기관의 대처 방법

- 성폭력 발생 시 목격자는 이를 즉시 중단시키고 기관장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관계자에 대한 확인 및 조사를 실시하고 교육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
- ③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④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실시

-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위를 정확히 파악 후 그 행위자를 징계한다.
- 성폭력을 한 수급자에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서비스 중단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개인의 대처방안

- ①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의사를 표현한다.
- ②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거부 의사 표시와 시정을 요구하고 가족에게도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정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둔다.
- ③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④ 심리적 치유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성폭력피해신고 ☎1899-3075,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 ⑤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한다.
- ⑥ 가능하다면 주변 직원들과 문제를 의논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3. 성폭력 대처방안

가. 상담신청, 신고, 인지

- 기관에서 본인, 가족, 타인(직원 포함) 성폭력 발생 또는 발견 시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접수 및 조사

- 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 개시 및 진행사항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 피해자, 성폭력 용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 및 기록한다.

- 조사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양자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로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여 성폭력 대상자와 대질조사를 지양하고 참고인 및 증인의 증언을 들어서 처리할 수 있다.
-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피해자와 증인은 용의자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 담당자는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다. 사건의 종결

- 조사결과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한다.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건 처리 후의 결과를 통지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된다.
- 조사결과 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사건을 종결한다. 기관장은 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권리구제 및 성폭력 피해 상담 연락처

- ☎ 033-811-228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 ☎ 1331 국가인권위원회
- ☎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112 경찰 고발
- ☎ 1350 고용노동부